

제334회 정례회 제1차~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2014. 9. 16.(화)~9. 17.(수)

-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국, 충북도립대학)



정 책 복 지 위 원 회



목 차



- I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일반회계
 - ① 세입결산
 - ② 세출결산
 - 2. 특별회계
 - ① 공기업특별회계
 - ② 기타특별회계
 - 3. 기금결산
 - 4. 채권현재액보고서
- II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보건복지국】

-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① 세입결산
 - ② 세출결산
 - ③ 예비비 지출
 - ④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① 세입결산
 - ② 세출결산
- 3. 기금결산
 - ① 자활기금
 - ② 사회복지기금
 - ③ 식품진흥기금

【충북도립대학】

- 1.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① 세입결산
 - ② 세출결산
- 2.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I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일반회계

1 세입결산

(단위:원)

구분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결정액 ㉔	수납액			미수납 액 ㉕=㉓-㉖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총액 ㉖	과오납 반환액㉗	실수납액 ㉘=㉖-㉗		
계	1,422,306,636,000		1,422,306,636,000	1,413,409,575,420	1,414,649,025,600	1,255,028,000	1,413,393,997,600	15,577,820	15,577,820
여성정책관사무	21,744,570,000		21,744,570,000	21,739,619,140	21,814,838,610	85,227,000	21,729,611,610	10,007,530	10,007,530
여성발전센터	238,298,000		238,298,000	240,317,070	240,317,070		240,317,070		
기획관리실	765,045,102,000		765,045,102,000	756,837,507,560	756,837,507,560		756,837,507,560		
보육복지과	634,120,306,000		634,120,306,000	633,539,770,950	634,704,001,660	1,169,801,000	633,534,200,660	5,570,290	5,570,290
보육지원과	1,158,360,000		1,158,360,000	1,052,360,700	1,052,360,700		1,052,360,700		

□ 세입결산 내역

-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조 4,223억 663만 6천원임
- 수납총액은 1조 4,146억 4,902만 6천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12억 5,502만 8천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조 4,133억 9,399만 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557만 8천원임
- 미수납액 1,557만 8천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2014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 증감(나)		예산현액 (다=가+나)	지출액 (라)	이월액 (마)	집행잔액 (바=다-라) (마)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 용				
계	1,192,667,864,000	4,403,558,600	△1,924,932,000	1,195,146,490,600	1,141,266,361,770	2,131,500,000	51,748,628,830
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포함)	33,888,799,000	3,822,678,600		37,711,477,600	35,599,267,810	1,966,000,000	146,209,790
기획관리실 (세종사무소포함)	289,223,378,000		△4,099,134,000	285,124,244,000	234,920,145,280	157,500,000	50,046,598,720
보건복지국	861,917,066,000	580,880,000	2,174,202,000	864,672,148,000	863,268,209,640	8,000,000	1,395,938,360
보건환경연구원	7,638,621,000			7,638,621,000	7,478,739,040		159,881,960

□ 세출결산 내역

-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예산액 1조 1,926억 6,786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44억 355만 9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사용액 19억 2,493만 2천원을 감한 1조 1,951억 4,649만원임
- 이중 1조 1,412억 6,636만 2천원을 지출하고 21억 3,150만원을 다음연도(2014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7억 4,862만 9천원임

2. 특별회계

①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여 P-14에서 세부 설명하며 현금수지는 아래와 같음

(단위:원)

회 계 명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48,722,250,000	254,002,449,569	186,137,338,254	67,865,111,315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540억 245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61억 3,733만 8천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순세계잉여금 678억 6,511만 1천원을 다음연도(2014년)로 이월하였음

2 기타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원)

구분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결정액 ㉔	수납액			미수납액 ㉕=㉓-㉖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총액 ㉖	과오납 반환액㉗	실수납액 ㉘=㉖-㉗		
계	209,960,568,000	0	209,960,568,000	209,486,749,512	209,546,478,762	59,728,500	209,486,750,262	△750	△750
충북도립대학교 운영특별회계	10,052,186,000		10,052,186,000	10,165,675,342	10,225,403,842	59,728,500	10,165,675,34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9,908,382,000		199,908,382,000	199,321,074,170	199,321,074,920		199,321,074,920	△750	△750

□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2종임

○ 201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099억 6,056만 8천원임

○ 수납총액은 2,095억 4,647만 9천원이나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094억 8,675만원임

나) 세출결산

(단위:원)

구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㉒		예산현액 ㉓=㉑+㉒	지출액 ㉔	이월액 ㉕	집행잔액 ㉖=㉓-㉔-㉕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용				
계	209,960,568,000			209,960,568,000	207,213,374,080		2,747,193,920
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10,052,186,000			10,052,186,000	9,307,442,150		744,743,8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9,908,382,000			199,908,382,000	197,905,931,930		2,002,450,070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99억 6,056만 8천원으로 2,072억 1,337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억 4,719만 4천원임

3. 기금결산

(단위: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㉓=㉔+㉕)	조성액㉔	사용액㉕	
계	8종	41,266,790,126	918,181,372	5,821,879,426	4,903,698,054	42,184,971,498
여성정책관	청소년육성기금	878,153,276	714,083	21,214,083	20,500,000	878,867,359
	여성발전기금	5,516,468,113	45,850,054	132,835,054	86,985,000	5,562,318,167
정책기획관	통합관리기금	2,257,293,489	370,764,336	2,041,878,656	1,671,114,320	2,628,057,825
	지방채상환기금	44,977,826	924,410	924,410		45,902,236
보건복지국	자활기금	1,885,792,402	△97,788,993	167,861,007	265,650,000	1,788,003,409
	사회복지기금	19,903,406,441	276,054,494	481,968,994	205,914,500	20,179,460,935
	식품진흥기금	10,682,942,834	300,701,605	1,372,531,115	1,071,829,510	10,983,644,439
충북도립대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97,755,745	20,961,383	1,602,666,107	1,581,704,724	118,717,128

-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2012년)말 조성액은 총 412억 6,679만원임
- 당해 연도에는 58억 2,187만 9천원을 조성하고 49억 369만 8천원을 사용하여 9억 1,818만 1천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 총 규모는 421억 8,497만 1천원 임

4. 채권현재액보고서

(단위:원)

회 계 명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625,806,568,934	172,470,003,670	137,332,833,670	660,943,738,934
일반회계	보증금채권	사무실임대	1,483,800,000	2,688,000,000	2,827,800,000	1,344,000,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금채권	지역개발	620,659,800,000	168,209,972,440	132,770,472,440	656,099,300,000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보증금채권	사무실임대	728,838,934			728,838,934
자 활 기 금	융자금채권	기타	719,000,000	294,798,940	188,238,940	825,560,000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채권	기타	2,215,130,000	1,277,232,290	1,546,322,290	1,946,040,000

-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당해연도 채권액의 총 규모는 6,258억 656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1,724억 7,000만 3천원이고 소멸액은 1,373억 3,283만 3천원임
- 이 중 99%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은 시·군 융자금 채권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1,682억 997만 2천원이고 소멸액은 1,327억 7,047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60억 9,930만원임

II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보 건 복 지 국』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보건복지국 201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단위: 원)

구분	예산액 ㉑	잔도 이월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결정 액 ㉔	수납액			미수납 액 ㉕=㉓-㉔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수납액 ③=①-②		
계	634,120,306,000		634,120,306,000	633,539,770,950	634,704,001,660	1,169,801,000	633,534,200,660	5,570,290	5,570,290
복지정책과	380,604,033,000		380,604,033,000	380,582,217,850	381,748,333,580	1,169,801,000	380,578,532,580	3,685,270	3,685,270
세외수입	61,268,446,000		61,268,446,000	61,246,630,850	61,254,556,580	11,621,000	61,242,945,580	3,685,270	3,685,270
지교부세	1,752,000,000		1,752,000,000	1,752,000,000	1,752,000,000		1,752,000,000		
보조금	317,583,587,000		317,583,587,000	317,583,587,000	318,741,767,000	1,158,180,000	317,583,587,000		
노인장애안과	205,868,164,000		205,868,164,000	205,419,935,590	205,418,050,570		205,418,050,570	1,885,020	1,885,020
세외수입	1,419,762,000		1,419,762,000	1,505,293,590	1,503,408,570		1,503,408,570	1,885,020	1,885,020
지교부세	1,930,024,000		1,930,024,000	1,930,024,000	1,930,024,000		1,930,024,000		
보조금	202,518,378,000		202,518,378,000	201,984,618,000	201,984,618,000		201,984,618,000		
보건정책과	40,834,363,000		40,834,363,000	40,725,524,890	40,725,524,890		40,725,524,890		
세외수입	460,753,000		460,753,000	373,711,890	373,711,890		373,711,890		
보조금	40,373,610,000		40,373,610,000	40,351,813,000	40,351,813,000		40,351,813,000		
식품의약품안전	6,813,746,000		6,813,746,000	6,812,092,620	6,812,092,620		6,812,092,620		
세외수입	406,794,000		406,794,000	405,140,620	405,140,620		405,140,620		
보조금	6,406,952,000		6,406,952,000	6,406,952,000	6,406,952,000		6,406,952,000		

-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341억 2,030만 6천원임
- 수납총액은 6,347억 400만 2천원이나 과오납반환액 11억 6,980만 1천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6,335억 3,420만 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57만원으로 다음연도(2014년)로 이월하였음

② 세출결산

[보건복지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㉒		예산현액 ㉓=㉑+㉒	지출액 ㉔	이월액 ㉕	집행잔액 ㉖=㉓-㉔-㉕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용				
계	861,917,066,000	580,880,000	2,174,202,000	864,672,148,000	863,268,209,640	8,000,000	1,395,938,360
복지정책과	500,050,861,000	580,880,000	2,174,202,000	502,805,943,000	502,713,755,100	8,000,000	84,187,900
노인장애인과	281,805,281,000			281,805,281,000	280,617,443,330		1,187,837,670
보건정책과	66,950,287,000			66,950,287,000	66,834,541,100		115,745,900
식품의약품안전과	13,110,637,000			13,110,637,000	13,102,470,110		8,166,890

-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088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1억 7,420만 2천원을 포함한 총 8,646억 7,214만 8천원으로
- 이중 8,632억 6,821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다음연도(2014)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억 9,593만 8천원임

③ 예비비 지출

(단위: 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사유
조 직	세 부 사 업	통계목					
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료지원 공자금 상환	과오납금등	2,174,202,000	2,174,201,300		700	2012년도 영유아보육료 정부지원 공자금상환

- 예비비 지출은 복지정책과 소관 영유아보육료지원 공자금 상환으로 지출 결정액 21억 7,420만 2천원중 21억 7,420만 1천원을 지출하였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명시이월)

(단위: 원)

조직	과 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다음연 도이월 액㉓	집행잔액 ㉔=㉑-㉒-㉓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복지 정책 과	충북4.19학생혁명 기념탑오석교체	사설비	8,000,000		8,000,000		설치하고자 하는 기념탑 에 충주고 학생 등의 시위 내용이 누락되어 사실 확인 및 취지문 수정 문구안 마 련에 따른 시일소요

-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 소관 충북 4.19학생 혁명 기념탑 오석교체 사업으로 기념탑 문구 사실 확인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800만원을 이월하였음

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타회계)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분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결정액 ㉔	수납액			미수납 액 ㉕=㉓-㉖-㉗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총액 ㉖	과오납 반환액 ㉗	실수납액 ㉘=㉖-㉗		
계	199,908,382,000		199,908,382,000	199,321,074,170	199,321,074,920		199,321,074,920		△750
의료급여기금	199,908,382,000		199,908,382,000	199,321,074,170	199,321,074,920		199,321,074,920		△750
세외수 입	41,811,674,000		41,811,674,000	41,224,366,170	41,224,366,920		41,224,366,920		△750
보조금	158,096,708,000		158,096,708,000	158,096,708,000	158,096,708,000		158,096,708,0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999억 838만 2천원이고, 실 수납액은 1,993억 2,107만 5천원임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지출액 ㉔	이월액 ㉕	집행잔액 ㉖=㉓-㉔-㉕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용				
의료급여기금	199,908,382,000			199,908,382,000	197,905,931,930		2,002,450,07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99억 838만 2천원으로 이 중 1,979억 593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245만원임

3. 기금결산

① 자활기금

가) 결산현황

(단위: 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보건복지국	자활기금	1,885,792,402	△97,788,993	167,861,007	265,650,000	1,788,003,409

- 자활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7억 8,800만 3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8억 8,579만 2천원 보다 △9,778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477,883,409	90,271,810	100,000,000	210,022,402	42,179,197	35,410,000	477,883,409	75,650,000	190,000,000	212,233,409

- 자활기금의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9,027만 2천원, 예탁금상환금 1억, 예치금 회수 2억 1,002만 2천원, 이자수입 4,217만 9천원, 기타수입 3,541만원 등 총 4억 7,788만 3천원임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7,565만원을, 융자금으로 1억 9,000만원 예치금으로 2억 1,223만 3천원을 지출하였음

② 사회복지기금

가) 결산현황

(단위: 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기금	19,903,406,441	276,054,494	481,968,994	205,914,500	20,179,460,935

- 사회복지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1억 7,946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99억 340만 6천원보다 2억 7,605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2,913,050,369	2,431,081,375	481,968,994		2,913,050,369	205,914,500	2,581,135,869	126,000,000

- 사회복지기금의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4억 3,108만 1천원, 이자수입 4억 8,196만 9천원 등 총 29억 1,305만원 임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 591만 5천원을, 예치금 25억 8,113만 6천원, 예탁금으로 1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음

③ 식품진흥기금

가) 결산현황

(단위: 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㉓=㉔-㉕) ㉔	조성액㉔	사용액㉕	
보건복지국	식품진흥기금	10,682,942,834	300,701,605	1,372,531,115	1,071,829,510	10,983,644,439

- 식품진흥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9억 8,364만 4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06억 8,294만 2천원보다 3억 70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예탁금	기타지출
5,305,473,949	845,232,290	3,932,942,834	320,783,390	206,515,435	5,305,473,949	509,595,510	556,000,000	3,933,644,439	300,000,000	6,234,000

- 식품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8억 4,523만 2천원, 예치금 회수 39억 3,294만 2천원, 이자수입 3억 2,078만 3천원, 기타수입 2억 651만 5천원 등 총 53억 547만 4천원임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으로 5억 959만 6천원을, 융자금 5억 5,600만원, 예치금 39억 3,364만 4천원, 예탁금 3억원, 기타지출로 623만 4천원을 지출하였음

<<검토의견>>

□ 일반회계

-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수납총액은 6,347억 400만 2천원이나 과오납반환액 11억 6,980만 1천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6,335억 3,420만 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57만원으로 다음연도(2014년)로 이월하였음
 - 미수납액은 복지정책과 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 368만 5천원과 노인 장애인과 세외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188만 5천원으로, 시·군 보조사업 집행 후 남은 보조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이월된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8,646억 7,214만 8천원으로, 8,632억 6,821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다음연도(2014)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3억 9,593만 8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율은 2%로 예산 수립 및 집행 등 건전예산 운영에 적극 노력하였음
 - 다만, 사업집행이 미진한 복지정책과 「입양 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 및 「어린이집 교원양성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명시이월된 충북 4.19학생혁명 기념탑 오석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현황 및 이월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실 수납액은 1,993억 2,107만 5천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없이 대체로 정확한 세수추계에 노력하였음
-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999억 838만 2천원으로 이중 1,979억 593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245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이 1%로 저소득층 의료 보장 등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사료됨

□ 기금

-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 조성액은 17억 8,800만 3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8억 8,579만 2천원 보다 △9,778만 9천원이 감소하여 기금 조성액 증대 및 건전운용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저소득 자녀 장학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조성이나 집행방법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 업소 지원 사업 등 식품위생선진화 추진을 위해 적의 운영되고 있음

별첨

[보건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현황]
(집행잔액을 20%이상)

(단위: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	결산서 (Page)
복지정책과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	10,971,000	2,571,000	23.4	P-100
복지정책과	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83,532,000	17,652,000	21.1	P-107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지원(자체)	25,963,000	12,983,000	50	P-114
노인장애인과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	20,000,000	10,000,000	50	P-11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장비구입	10,000,000	10,000,000	100	P-125

『충 북 도 립 대 학』

1.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① 세입결산

[충북도립대학 2013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원)

구분	예산액 ㉑	전 년 이 월 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결정액 ㉔	수 납 액			미수납액 ㉕=㉓-㉖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수납액 ③=①- ②		
계	10,052,186,000		10,052,186,000	10,165,675,342	10,225,403,842	59,728,500	10,165,675,342		
충북도립대학	10,052,186,000		10,052,186,000	10,165,675,342	10,225,403,842	59,728,500	10,165,675,342		
세외수입	10,052,186,000		10,052,186,000	10,165,675,342	10,225,403,842	59,728,500	10,165,675,342		

-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5,218만 6천원이며
- 수납총액은 102억 2,540만 4천원이나 과오납반환액 5,972만 9천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01억 6,567만 5천 원임

② 세출결산

[충북도립대학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㉒		예산현액 ㉓=㉑+㉒	지출액 ㉔	이월액 ㉕	집행잔액 ㉖=㉓-㉔- ㉕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 용				
계	10,052,186,000			10,052,186,000	9,307,442,150		744,743,850
충북도립대학	10,052,186,000			10,052,186,000	9,307,442,150		744,743,850

-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5,218만 6천원으로
- 이중 지출액은 93억 744만 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474만 4천 원임

2.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결산

① 결산현황

(단위: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㉓=㉔- ㉕)	조성액(㉔)	사용액(㉕)	
충북도립대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97,755,745	20,961,383	1,602,666,107	1,581,704,724	118,717,128

-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1,871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775만 6천 원 보다 2,09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음

②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계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1,700,421,852	160,000,000	97,755,745	667,787	1,441,998,320	1,700,421,852	1,581,704,724	118,717,128	

-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의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1억 6,000만원, 예치금회수 9,775만 6천원, 이자수입 66만 8천원, 기타수입 14억 4,199만 8천원 등 총 17억 42만 2천원임
-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으로 15억 8,170만 5천원, 예치금 1억 1,871만 7천원을 지출하였음

<<검토의견>>

□ 특별회계

- 충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총액은 102억 2,540만 4천원이나 과오납반환액 5,972만 9천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01억 6,567만 5천원임
 - 과오납반환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로 발생사유와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억 5,218만 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3억 744만 2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7억 4,474만 4천원으로 집행 잔액율은 7.4%로 건전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음
 - 다만,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금

-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1,871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775만 6천원 보다 2,096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 기금 조성액 자체가 적어 기금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외부 기탁 장학금 유치 등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함

별 첨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율 현황]] (집행잔액율 20%이상)

(단위: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	결산서 (Page)
충북도립대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41,200,000	87,532,000	36.3%	P-206

의안번호	제 34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9 월 일 (제 334 회)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병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5일
발의자 : 최병윤,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임병윤, 장선배,
이광진

1. 제정이유

-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가족 유형이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효경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하고 있음
※충북 65세 이상 노인인구 : 225,683명(총인구대비 14.3% / '14년 6월 기준)
-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07.8.3.)·시행되고 있으나,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므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대에 부합한 효행문화를 장려 촉진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연차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지원 및 교육 담당인력 양성지원(안 제5조)
- 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라. 효의 날(10. 2) 지정(안 제8조)
- 마.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9조)
- 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예우·지원(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4-19호

라. 협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였음.

마. 비용추계서 : 별첨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을 권장하여 새 시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새 시대의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교육 및 담당인력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② 도지사는 효행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효의 날 지정)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도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8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①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
2. 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예우 및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장려 사업 지원, 효행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 등

2. 비용 발생 요인

-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지원 소요 사업비
- 기관·단체 등 효행교육 실시 사업비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효행교육 및 담당인력 양성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지원(50명) 및 효행교육 사업비 지원(500개소 × 2시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지원 : 19,000천원 (단년)
- 기관·단체 등 효행교육 : 50,000천원 (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지원 : 도비(50%), 자부담(50%)
- 기관·단체 등 효행교육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신 재 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69,000	50,000	50,000	50,000	50,000	269,000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19,000					19,000
기관·단체등 효행교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69,000	50,000	50,000	50,000	50,000	26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59,500	50,000	50,000	50,000	50,000	257,6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9,500					9,500



제334회 정례회
2014. 9. 17.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최병윤 의원 외 6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9월 5일
- 회부일자 : 2014년 9월 11일

3. 제정이유

-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가족 유형이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효(孝)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하고 있음
※ 충북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3% ('14. 6. 기준)로 고령사회에 진입함.
-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07.8.3.)·시행되고 있으나,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므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대에 부합한 효행문화를 장려 촉진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연차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지원 및 교육 담당인력 양성지원(안 제5조)
- 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라. 효의 날(10. 2) 지정(안 제7조)
- 마.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8조)
- 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예우·지원(안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의 효(孝) 중심 미풍양속은 후퇴되고 있고,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관심이 미약한 현 시점에서 도 조례 제정을 통한 효행문화 장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됨.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7개 광역·자치시·도 중 충북,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목적)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을 권장하여 새 시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효’, ‘효행’, ‘부모 등’, ‘경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는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새 시대의 효행 문화 장려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 안 제4조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계획 수립 시 교육감 및 시장·군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명시함.
 - 안 제5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명시된 기관, 단체에 대하여 효행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행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안 제6조는 부모 등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안 제7조는 도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2일을 ‘효의 날’로 지정토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예우지원의 근거를 명시함.
 - 안 제10조는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도의회 입법팀 및 충청북도 교육청 담당부서(진로인성교육과)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성안된 바, 내용 및 법리적으로 타당함.
- 충청북도 담당부서 의견수렴(노인장애인과-13143, 2014. 8. 14)
 - 충청북도의회 입법팀 의견수렴(의회운영전문위원-2097, 2014. 8. 27)
 - 충청북도 교육청 담당부서 의견수렴(진로인성교육과-17817, 2014. 8. 28)